



경기도의회 제393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 경기도지사 제출 제145번

2026. 9. 7.(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요구이유

- 2027년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나.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5조
- 필요성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함

다. 위탁사무 내용

1) 주요 사무내용

- 청소년지도자 현장 역량개발 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활동 연구 분석 및 정책자료 보급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인증제 운영·지원
-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소진예방 지원, 사회배려 청소년활동 운영지원
- 청소년 관련 정보 수집·분석·조사를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활동 홍보
- 현장 네트워크(학교, 청소년 유관기관 등)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 청소년 포상제 운영·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운영·지원
-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청소년활동대상 운영
-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스포츠 동아리 한마당 사업

2) 소요예산 : 1,699,000천원 / 도비 100%

- 인건비·경상비 1,030,000천원
- 사업비(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사업 등 16개) 699,000천원

마. 위탁시설 개요

- 1) 시 설 명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2)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55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관 3층
- 3) 구성인원 : 15명(센터장 1, 팀장 4, 팀원 8, 무기계약직 2)

바. 위탁기간 : '27. 1. 1 ~ '29. 12.31(3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청소년 단체·법인)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1) 청소년 활동에 대한 노하우와 청소년 활동 현장 경험·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 필요
- 2) 청소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구축된 인적 자원 등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수혜자인 청소년, 청소년지도사, 학부모 등의 만족도를 높여 정책의 질을 향상
- 3) 추진사업과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을 고려할 때, 도 직접 운영 대비 민간 위탁이 효율적임

※ 2026년 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기획담당관-8740(2026.8.3.)호) : 적정

3. 검토의견

■ 동의안 제출취지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청소년 지도자 맞춤형 교육 등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에 대한 노하우와 청소년 활동 현장 경험과 관련 전문 지식이 요구되기에 현재 그 역할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설 개요 》

- ▶ 운영법인 : (재)대건청소년회
- ▶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 (2년)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3층(송죽동, 경기도행정동우회관)
- ▶ 인 력 : 15명 (센터장 1, 팀장 4, 팀원 10) / 센터장 - 권구연
- ▶ 시설규모 : 327.27㎡(사무실, 강의실, 회의실 등)

- '25년부터 2년간 추진한 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1항¹⁾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 위탁기간은 3년(2027. 1. 1. ~ 2029. 12. 31.)이며, 소요예산은 약 17억 원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임.
- 본 동의안은 '2026년 제4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에 앞서 내부적인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음.

1)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및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5조2)에 따라 도는 도내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2)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제도의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9. 청소년 참여 관련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은 청소년활동 실태를 바탕으로 한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개발 및 실행 지원, 청소년지도자 현장 역량개발 지원, 청소년 관련 정보 수집·분석·조사를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현장 네트워크(학교, 청소년 유관기관 등)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포함하므로,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³⁾의 민간위탁 기준에 부합함.

○ 한편,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재)대건청소년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이후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주요 추진실적(2024 ~ 2026)>

(단위 : 건, 명)

구분	합계	청소년활동 현장역량 증진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청소년 정보 지원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청소년활동사 업개발 및 운영
총계	127,191	13,021	69,557	6,648	1,706	36,259
2024년	47,413	4,649	34,070	2,595	918	5,181
2025년	52,061	5,514	25,974	2,500	564	17,509
2026.7	27,717	2,858	9,513	1,553	224	13,569

3)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기준)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

■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필요성) 검토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지원을 비롯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만큼, 본 사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 그리고 차별화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 수행 현원은 15명으로 도 직접 수행으로 전환하였을 시 행정인력 증대 등 행정 비대화가 우려됨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기 구축된 인적 자원 등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 수혜자인 청소년, 청소년지도사, 학부모 등의 만족도를 높여 정책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3항⁴⁾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으로서 위탁 진행에 있어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협약서 제출, 고용유지·승계 및 고용기간, 노동조건 보호 등 권고사항을 잘 이행해야 할 것임.

4)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협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